

<중국사무소>

중국문화산업 이슈페이퍼

2008년 8월3주

KOCCA 중국사무소

□ 목 차

1. 소주공원원구 투자 기업 우대 정책.....	3
----------------------------	---

소주공업원구 투자 기업 우대 정책

소주 공업원구는 원구 내에 설립된 투자기업에 일련의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아래 소주 공업원구의 두 개 관리방법 «소주 공업원구 창업벤처 후속투자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와 «소주 공업원구 창업투자기업 리스크 보상금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내용을 소개한다.

쑤저우(蘇州)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문건

소원관(蘇園管) [2007] 25호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벤처 후속투자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각 국(局) 사무실, 각 기업, 각 파견기관, 각 직속단체, 각 진(鎭), 각 관련 단체: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벤처 후속투자 관리방법»은 2007년 5월16일 업무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통과하였으며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성실하게 관철집행하기 바라는 바이다.

상기 내용을 각 관련자들에게 통보한다.

2007년 5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쑤저우 공업원구의 자주적인 창조와 과학기술 창업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유도, 활성화 시키며 창업투자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업원구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후속투자자금의 출처는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 부대(配套)자금 (아래 부대자금으로 약칭함)으로 공업원구 정부의 예산 범위 내의 자금이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하이테크기업이라 함은 쑤저우 공업원구 내에 등록된 기업으로써 생산하는 제품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의 하이테크산업정책과 공업원구 산업발전방향에 부합되고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업체를 가리킨다.

제2장 투자방식

[제4조] 본 방법이 규정하는 후속투자라 함은 창업투자기업이 공업원내에서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정 후, 부대자금을 창업투자기업 실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제공하여

지분투자 하는 것을 가리키며, 동등한 조건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연합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부대자금으로 제공되는 후속투자 규모는 창업투자기업 해당 투자금액의 30% 전후이고, 출자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출자를 기준으로 한다. 투자가치는 신청하는 투자기업의 투자가치와 동등하다. 동일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부대자금은 1회에 한하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1회 후속투자 금액의 최대 한도는 400만 위안이다.

[제6조] 프로젝트 투자가 성공할 경우, 해당 투자 후 5년 내에 창업투자기업은 부대자금의 원금에 동기 은행대출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한 금액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부대자금이 차지하는 지분을 매입할 권리가 있다. 프로젝트 투자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회사는 청산에 들어간다. 청산으로 획득된 자금은 우선 법적인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배 순위는 창업투자기업, 부대자금, 프로젝트 창업팀으로 한다.

[제7조] 창업팀이 하이테크기업에 투입한 창업자금은 부대자금 투자금액에 계산하지 않으며, 창업팀은 부대자금 투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입할 권리가 없다.

제3장 창업투자기업의 인정

[제8조] 본 방법이 규정하는 창업투자기업이라 함은 쑤저우 공업원구 내 하이테크기업에 주식투자를 진행하여 투자기업의 발전이 성숙되거나 상대적으로 성숙된 다음 주로 지분양도 방식을 통하여 자본가치 증가 수익을 취득하는 해외투자기업과 «창업투자기업관리잠정방안(创业投资企业管理暂行办法)», «외상투자기업관리규정(外商投资企业管理规定)» 및 기타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경내에 설립된 투자기구를 가리킨다.

[제9조]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을 구비한 경내/외 창업투자기업은 모두 부대자금 투자 협력 파트너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1)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등기/등록을 완료한 창업투자기업
- (2) 등록자본금이 3000만 위안 이상 혹은 수탁 관리하는 창업투자 자금이 1억 위안 이상인 창업투자기업
- (3) 회사의 경영이 체계화되어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투자결정 프로세스 및 장려/구속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기업
- (4) 성공적 투자사례가 있거나, 투자 받은 기업의 경영상황이 양호한 창업투자기업
- (5) 최소한 3명의 2년 이상 창업투자 혹은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고급관리인원이 투자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창업투자기업

[제10조] 신청하여 부대자금 투자 협력파트너가 된 창업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유효한 서류를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다.

- (1) 투자기구 기본상황 소개자료
- (2) 영업집조(사업자등록) 복사본 혹은 기타 영업자격증명 문서
- (3) 기업정관 등 관련 문서
- (4) 기업의 주요 투자관리인원의 프로필, 3명 이상(3명 포함) 관리인원의 업계종사배경 및 투자기록 등 서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4장 수리 및 심사허가

[제11조] 공업원구 협력파트너로 인정받은 창업투자기업이 공업원구 내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유효한 서류를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에 제출하여 부대자금의

후속투자를 신청할 수 있다.

- (1) 쑤저우 공업원구 벤처창업 추가자금 투자신청서
- (2) 공업원구 내 투자한 기업의 영업집조 복사본
- (3) 창업투자기업이 투자대상 기업의 기타 주주 혹은 협력 파트너와 체결한

«합자(합작)의향서»

- (4) 창업투자기업의 기 비준된 투자결정 문서의 부분(副本)

[제12조]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은 후속투자를 신청한 창업투자기업의 투자행위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사 확인하고 기본적인 심사의견을 과기 지도팀(科技領導小組)에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한다. 과기 지도팀의 비준을 거친 후,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은 창업투자기업이 합의서 규정에 따라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신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유한공사(中新蘇州工業園區創業投資有限公司)에 위탁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기타 모든 주주와 공동으로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근무일 기준 10일 내에 출자를 완료한다.

[제13조] 본 방법 실시 과정 중 창업투자기업이 허위 투자로 부대자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업원구는 해당 창업투자기업의 협력파트너의 자격을 취소하고 상환청구권(追訴權)을 보류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 본 방법은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의 책임하에 해석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험 실행한다.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문건

소원관(蘇園管)[2007] 24호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기업 리스크 보상금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각 국(局) 사무실, 각 기업, 각 파견기관, 각 직속단체, 각 진(鎮), 각 관련 단체: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기업 리스크보상금 관리방법»은 2007년 5월16일 업무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통과하였으며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성실하게 관철집행하기 바라는 바이다.

상기 내용을 각 관련자들에게 통보한다.

2007년5월22일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기업 리스크보상금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쑤저우 공업원구의 자주적인 창조와 과학기술 창업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유도, 활성화 시키며 창업투자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업원구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후속투자자금의 출처는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 부대(配套)자금 (아래 부대자금으로 약칭함)으로 공업원구 정부의 예산 범위 내의 자금이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하이테크기업이라 함은 쑤저우 공업원구 내에 등록된 기업으로써 생산하는 제품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의 하이테크산업정책과 공업원구 산업발전방향에 부합되고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업체를 가리킨다.

제2장 보상금 내역

[제4조] 2007년 1월 1일부터 쑤저우 공업원구에 독립적인 법인자격으로 등록된 창업투자기업은 50만 위안의 가동자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 내에 설립한 창업투자기업의 지사 혹은 사무처가 공업원구 내 고정적인 사무장소와 상주인원이 있을 경우 20만 위안의 가동자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쑤저우 공업원구에 기구(법인, 지사 혹은 사무처를 가리킴_역자주)를 설립한 창업투자기업이 공업원구의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업원구 리스크보상금은 공업원구 하이테크기업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따라 5% 비율의 전용 리스크보상금 형식으로 지불하며 1회 최고보상금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 쑤저우 공업원구에 기구를 설립한 창업투자기업이 공업원구의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하였지만 투자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업원구 리스크보상금은 전용 리스크보상금 형식으로 지불한다. 보상금액은 공업원구 하이테크기업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5%로 하고 1회 최고보상금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3장 보상금 지불대상

[제7조] 리스크보상금을 취득하는 창업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登記/등록을 완료한 창업투자기업
- (2)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창업투자기업
- (3) 투자한 기업이 공업원구 내 하이테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 하이테크 산업정책과 공업원구 산업발전방향에 부합되며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창업투자기업이 공업원구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한 경우

[제8조] 인정을 받은 창업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본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등록자본금이 3000만 위안 이상 혹은 수탁 관리하는 창업투자 자금이 1억 위안 이상인 창업투자기업
- (2) 회사의 경영이 체계화되어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투자결정 프로세스 및 장려/구속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기업
- (3) 성공적 투자사례가 있거나, 투자 받은 기업의 경영상황이 양호한 창업투자기업
- (4) 최소한 3명의 2년 이상 창업투자 혹은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고급관리인원이 투자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창업투자기업

[제9조] 창업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고,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다.

- (1) 투자기구 기본상황 소개자료
- (2) 영업집조(사업자등록) 복사본 혹은 기타 영업자격증명 문서
- (3) 기업정관 등 관련 문서
- (4) 기업의 주요 투자관리인원의 프로필, 3명 이상(3명 포함) 관리인원의 업계종사배경 및 투자기록 등 서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4장 수리와 심사 허가

[제10조] 쑤저우 공업원구에 기 등록된 창업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유효한 서류를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에 제출하여 가동자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리스크보상금 신청서
- (2) 영업집조 복사본

[제11조] 투자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창업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효력 있는 서류를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에 제출하여 리스크보상금을 신청한다.

- (1)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 리스크보상금 신청서
- (2) 창업투자기업이 투자 당시 체결한 투자 협의서
- (3) 투자 대상기업 이사회의 청산관련 서류

[제12조]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은 보상금을 신청하는 창업투자기업의 투자행위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여 기본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리스크보상금 지불건을 공업원구 과기지도팀 (科技領導小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공업원구 과기지도팀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후 관련 자금 지불수속을 밟는다.

[제13조] 가동자금과 투자보상금의 신청은 등록 후 반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실패보상금의 신청은 청산이 끝난 후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14조] 본 방법 실시 과정 중 창업투자기업이 허위 투자로 리스크보상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업원구는 상환청구권 (追訴權)을 보류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본 방법은 공업원구 과기발전국의 책임하에 해석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2년간 시험 실행한다.

